

부산지방법원 2022. 3. 11 선고 2021가단3035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수

변론 종결2022. 3. 4.

판결 선고2022. 3. 1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3,787원 및 그중 30,003,758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2021. 8. 18.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7.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20. 7. 1. 접수 제390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A은 2018. 11.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의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30,000,000원, 보증기한 2023. 10. 20.까지,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연 10%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은 2018. 11. 13.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2020. 8. 21.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다.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21. 1. 19. C은행에 대출원리금 30,112,828원(= 원금 30,000,000원 + 이자 112,82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현재 위 대위변제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30,003,787원(= 109,070원 회수 후 남은 대위변제금 30,003,758원 + 확정손해금 29원) 및 그중 30,003,758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 A은 원고에게 30,003,787원 및 그중 30,003,758원에 대하여 2021. 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8.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① 피고 A은 2020. 7.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4,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②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 적극재산: 이 사건 부동산 시가 214,000,000원 정도
- 소극재산: 합계 255,265,000원 정도
- D에 대한 근저당권부 전세보증금반환채무 180,000,000원
- 대부업권 대출금채무 11,590,000원 정도
- C은행 대출금채무(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30,000,000원
- E 할부금채무 33,675,000원 정도
- 기타 금융채무 등

[인정근거]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6다26335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또한, 실제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피고 A이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원고가 C은행에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 B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은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해 6. 30.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B은, 자신은 2020. 7. 1.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중 18,000,000원과 약정 이사비 1,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채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아니고,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 B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이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민석

별지